주식회사 쌍용씨앤비
ESG 위원회 규정

2023. 1. 20

주식회사 쌍용씨앤비

목 차

제 1 장 총칙
제 1 조 【목적】 ····· 1

제 2 장 구성
제 2 조 【구성 및 선임】 ····· 1
제 3 조 【위원장】 ····· 1
제 4 조 【위원의 임기】 ····· 1

제 3 장 회의
제 5 조 【위원회】 ····· 2
제 6 조 【위원회의 소집】 ····· 2
제 7 조 【결의방법】 ····· 2

제 4 장 권한 및 의무
제 8 조 【의사록】 ····· 2

제 5 장 기타사항
제 9 조 【규정의 개폐】 ····· 3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목적】
이 규정은 주식회사 쌍용씨앤비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2 조 【구성 및 선임】
①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
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제 3 조 【위원장】
①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【위원의 임기】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【위원회】
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② 반기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, 연간 활동실적과 차년도 계획은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6 조 【결의방법】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,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장 권한 및 의무

제 7 조 【부의사항】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 경영전략 및 정책 수립
2. ESG 경영목표, 추진현황, 성과의 평가 및 관리 · 감독
3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8 조 【의사록】

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9 조 【규정의 개폐】

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